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2021-4호

Contents

동향분석

미중 기술경쟁 어디까지 갈까 03

디지털세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동향 08

연설문 WTO 개혁관련 USTR 연설문 12

3분기 주요 통상뉴스 19



동향분석

미중 기술경쟁 어디까지 갈까

- 미국 대중경제정책의 내용과 함의 -

신각수 고문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미중 경쟁과 대립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신냉전'이라 부를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미국 정치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적 지지를 얻고 있는 분야가 대중(對中) 정책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무역정책

10월 4일 미국 통상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싱크탱크 CSIS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정책에 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은 미국 정부가 대중무역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류허 부총리와의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중국과의 교섭을 앞두고 상세한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보다 새로운 요소가 없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시대의 대중압박 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에서 대해서만 관세 인하조치를 시행하고, 2020년 예

외조치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1차 미중 무역합의의 불이행 결과에 초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 제301조 조사에 의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서 중국이 금년 말까지 2000억불의 미국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은 69%만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이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 대표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020년 1차 합의까지 약속을 위반한 사례와 중국의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의 피해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반시장적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의 중국에 맞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2차 협상(구조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중 단절 가능성도 세계 12위 무역국가 간에 비현실적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교육, 공급망에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2. TTC의 구성과 1차 회의결과

이에 따라 미국은 자체 기술의 개발 및 보호에 힘쓰면서 동맹국이나 파트너국들과 함께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6월 미국-EU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기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설립에 합의한 협의체인 ‘미국-유럽 무역기술이사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첫 번째 회의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미국 제조업의 상징적 지역으로 미국경제의 변환과 재생을 강조하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선택입니다. TTC는 아직 설립과정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미정이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협의체는 합의 문서를 교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국내당국자들 간에 지속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반영구적(semi-permanent) 기관을 창설하려는 의도로,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정책에서 환대서양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인 중국에 대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 바이든 외교의 특징인 동맹중시, 가치외교, 다자외교를 결합하는 주요 수단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깊은 대미 불신을 가져왔던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선거 약속을 이행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 할 것입니다. 최근 G7, G20, OECD등 다자포럼을 통한 글로벌 법인세 하한 설정의 성공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EU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10개 실무작업반(WG)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포함한 기술기준, ② 기후변화와 녹색기술, ③ 주요 물자 공급망(반도체 공급안정과 고급반도체 디자인·생산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반도체공급망의 재균형을 위한 새로운 미국-유럽 파트너십), ④ 정보통신의 안전과 경쟁력, ⑤ 정보관리 및 기술 플랫폼, ⑥ 안보와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오용, ⑦ 수출 통제, ⑧ 투자 심사, ⑨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접근 증진, ⑩ 세계무역 도전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Working Group	Topics	US Departments	EU Directorates General
Technology Standards Coop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Biotechnology,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l devices Additive manufacturing, robotics, blockchain, other emerging technologies	Commerce	CONNECT GROW
Climate and Clean Technologies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al initiatives that involve trade and technology	State USTR Energy	CONNECT CLIMA GROW
Secure Supply Chains	Semiconductors Batteries, critical minerals,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Commerce State	TRADE GROW
ICTS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Data security standards Secure, resilient, and diverse telecommunications and ICT infrastructure supply chains, 5G/6G	State Commerce	CONNECT
Data Governance and Technology Platforms	Establish responsibility of technology platforms, content regulation, targeted advertising and use of big data	White House	CONNECT JUST
Misuse of Technology Threatening Security & Human Rights	Counter cyber threats and technology used to violate human rights Address those conducting information / disinformation operations	State	CONNECT EEAS JUST
Export Controls Cooperation	Align export controls, improve information sharing and assess risks for sensi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surveillance technologies impacting human rights	Commerce State	TRADE
Investment Screening Cooperation	Improve information-sharing for screening of inbound foreign investment	Treasury State	TRADE
Promoting SME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Empower SMEs to reach more clients, ensure digital technologies benefit underserved communities	Commerce	GROW CONNECT
Global Trade Challenges	Trade policy toward non-market economies Avoid new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each other Trade and labor, including forced labor Other	USTR	TRADE

ICTS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ervices; SME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USTR = US Trade Representative; CONNECT =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 Technology; CLIMA = Directorate-General for Climate Action; GROW = Directorate-General

출처: PIIE, What is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회의를 개최하기 직전에 미국·호주·영국으로 구성된 AUKUS 동맹 결성과 호주 핵잠수함 건조 문제로 프랑스가 EU에 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로 봉합함으로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 타이 USTR대표, 라이몬도 상무장관, EU에서는 베타거 공정거래위원장, 돔브로브스키 무역장관이 참석하여 고위급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 구성을 보면 장차 무역, 공정거래, 기술, 외교 등으로 협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차 회의의 결과로 17쪽의 ‘피츠버그회의 성과(Outcome)’라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안보관련 투자심사에 있어서 집행수단을 강구하고, 비차별·투명성·예측가능성·비례성·책임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파트너국가·이해당사국과 연계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있어서는 다자접근, 공정성 보장, 사전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혁신적이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존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넷째, 반도체 공급망의 재균형을 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최신반도체 설계제조 능력을 배양하며, 반도체 가치사슬의 결함을 발견하여 대응하고, 국내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무역의 도전과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비시장·시장왜곡적 정책·관행을 방지하고, 신기술 분야의 무역을 촉진하고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무역·기후·환경 이슈에 대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작업반 별로 장래 업무과제를 특정하였으나, 차기 회의 일자와 장소는 프랑스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금년 내 유럽에서 개최하는 선에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3. TTC의 의의

이번 회의는 트럼프 시대 파괴된 미국과 유럽의 관계와 제도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화·소통 채널의 구축은 손상된 신뢰를 복원하는 데 필수적이며, 최근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으로 실수를 한 아프간 철군, 코로나백신 지식재산권문제, AUKUS 사태와 같이 대서양 간의 조율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초기 미국과 EU 간 밀월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경제회복,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등 분야에서 협력은 환대서양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이 중국에 치중하게 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자원배분을 우선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협력의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무그룹 구성에서 보듯이 노동자 권리의 보호, 중소기업의 정보화 등 바이든 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ISDS, 농업문제, 정부조달 등 난제를 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출발시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기할 점은 투명성을 강조하고 1차 회의 이전에 유럽 시민사회와 대화를 가진 사실입니다. 미국도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무난한 출발을 보인 TTC이지만 일정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 정부 당시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다시 시도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유럽산 트럭과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철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환경정책 차이와 난제를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문제, 정보와 사생활 보호, 탄소시장, 미국의 유럽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문제, WTO 분쟁해결절차 문제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동맹으로서 대중 정책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지만, 유럽은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싶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구소련과 달리 중국을 동반자·경쟁자·적대자의 복합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만큼 대중 입장이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 간극을 어떤 형태로 어느 선에서 메울 것인가에 따라 대중 공동보조의 폭과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향후 TTC의 발전 방향은 금년 내로 개최될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중(對中) 전략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프랑스, 독일 등이 인도태평양,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EU관계도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 미국의 외교적 행보가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미국도 좀 더 세심한 외교로 유럽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향분석

디지털세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동향

노형철 고문

1. 배경

2012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등이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OECD와 G20공동으로 BEPS관련 15개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1번 과제가 디지털세(일명, 구글세) 도입추진이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OECD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조세문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IT기업의 국제적 매출에 대해 국가간 과세권배분문제를 논의하는 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논의하는 Pillar 2의 두 가지 의제로 구분하여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2차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Pillar 1·2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어서 10월 8일 제13차 총회에서 지난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쟁점사항을 결정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¹의 지지를 얻어 최종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¹ 참여하지 않은 4개국은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2. OECD Pillar 1의 주요내용

현행 조세조약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만 과세권(법인세)을 가지고 있으나, Pillar 1이 도입되면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Pillar 1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이러한 세금의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입니다. 단,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되면서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Pillar 1의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두번째로 과세권배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소재지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한화 약 13억원)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이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세권 배분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을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Amount A와 Amount B로 구분하여 배분됩니다. Amount A는 글로벌 이익중 통상이익을 10%를 초과하는 이익(이하 ‘초과이익’)에 시장기여분을 감안한 배분율인 25%를 곱하여 시장소재지국 배분대상이익을 산출하고, 그 배분대상이익을 각 국가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Amount B는 초과이익중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계회사의 마케팅, 판매활동 등에 상응하는 이익배분 방법 표준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2년말까지 합의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Pillar 1은 2022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중순 국내비준 및 입법을 한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Pillar 1 시행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될 계획입니다.

3. OECD Pillar 2의 주요내용

나아가 글로벌기업의 특성상 저세율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여 저세율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 7.5억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대상입니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추가세액은 자회사가 최저한세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종모회사에게 우선 부과하고(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최저한세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회사들에 배분하여 과세합니다(비용공제부인규칙). 이러한 과세는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기업은 5년간 과세제외되며, 통세가 적용되는 국제해운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세율국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9%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양자조약에서 원천지국에 추가과세권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에 대하여 당초 미국은 21%(2017년 개정 미국 법인세율), EU를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는 12.5%를 주장하였으나, 2021.5.20. 미국이 최저한세율을 15%로 하향 제기함에 따라 2021.6.5.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총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합의되었습니다.

Pillar 2도 2021년 11월 모델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각국이 법제화한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공제부인규칙은 1년유예하여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4. 의미 및 평가

Pillar 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삼성전자(2020년 연결매출 약 138조원), SK하이닉스(2020년 연결매출 약 32조원)가 과세대상일 될 것이나, 시행 7년후 매출액 기준이 100억 유로로 축소되면 우리나라 약 300여개 기업이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Pillar 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언급하고 있는 Pillar 2는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 OECD 9위)²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됩니다.

² 국내 법인세율: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 ~ 2백억원) 20%, (2백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연설문

WTO 개혁관련 USTR 연설문

USTR대표 Katherine Tai는 2021년 10월 14일, 제네바 국제무역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산하 제네바 통상플랫폼(Geneva Trade Platform)에서 ‘국제 경제에서 WTO의 중요한 역할(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왜 WTO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 적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WTO가 어떻게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강연의 일부를 번역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이 WTO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Biden-Harris 행정부는 무역과 WTO가 경쟁을 유도하고 글로벌 도전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WTO를 설립하고 있는 마라케쉬 선언 및 협정에서는 무역이 생활 수준을 높이고,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환경을 보호 및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재집중이 모두에게 공동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종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근로자들의 살아 있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 년 동안, WTO 각료회의장 밖에서는 노동자 권리, 일자리 상실,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시위가 이어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역이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불평등 확대 및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칙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WTO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생각(vision)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릴 제12차 WTO 각료회의인 MC12는 이를 정확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WTO 규범은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민감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각료회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에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WTO는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세계가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은 한달반 동안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무역과 보건에 대한 제안서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협정문 기반 협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RIPS 위원회 협상은 쉽지 않았으며, WTO 회원국들의 입장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론은 특정 정부와 이해 관계자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만연하는 동안 제네바에서 평소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에 직면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무역원활화를 통한 회복력(resiliency) 및 준비(preparedness) 강화를 위한 각료 결정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향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COVID-19 대응으로부터 얻은 정보, 경험 및 교훈을 나눔으로써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무역과 보건 이슈는 MC12이후에도 논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12월에도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직면할 마지막 공중 보건 위기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우리는 20년 간의 어업보조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 기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개도국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택방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협정도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원양선박에서 강제 노동이 만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을 노력을 호소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WTO 개혁에 대한 솔직하고 생산적인 장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WTO의 현실은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통상장관들은 WTO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버블"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비난받아 왔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국제 발전을 느리게 반영하여 왔습니다.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로를 경청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목소리를 포함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내야 하며, 지난 25년 동안 사용해 왔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화 대 보호주의, 개발 대 발전과 같은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보(economic security)을 강화하는 공통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WTO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공평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모니터링 기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WTO 회원들은 문제를 논의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중요한 기능은 WTO의 특별하지만 과소평가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그들이 취하고 있는 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에 의미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절차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C12에서는 각 위원회가 규칙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WTO의 협상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2013년 이후 완전한 다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협상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이 진짜 주고 받을 때만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괄적으로 접근해오던 방식을 바꾸고, 투명성과 포용성을 개선하면서, 조직의 심의 기능(deliberative function)을 회복한다면, 보다 유연한 WTO를 만들기 위한 WTO 협상 기능을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WTO회원국들은 소송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교와 협상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 해결은 협상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가지 WTO핵심기능에 대한 개혁은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쟁 해결 시스템의 목적은 구성원 간에 상호 합의한 해결책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 해결”은 소송, 다시말해 장기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소송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역사를 생각해봅시다.

분쟁해결제도는 WTO 규범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준외교적(quasi-diplomatic), 준법적(quasi-legal) 절차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패널 또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 보고서는 20페이지 또는 30페이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해당 보고서가 1,000페이지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쟁해결시스템이 다루기 힘들고(unwieldy) 관료주의적(bureaucratic)으로 변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WTO에서 규모가 크고 심하게 싸웠던 사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2004년에 시작된 대규모 민간 항공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연합 및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쟁 해결 시스템의 발전을 왜곡하는 압박(strains)과 압력(pressures)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에 16년이 걸리는 해결시스템은 “완전히 작동하는” 것인가요?

분쟁 해결 개혁은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거나,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WTO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 해결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면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나가는데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개혁된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하지 맙시다. 이미 일부 회원국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WTO의 3가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강화는 이행을 점검하고, 규범을 협상하며,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연의 서두에서 WTO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낙관적인 확약(affirmation of optimism)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반성의 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마라케쉬 협약(Marrakesh Agreement)의 서두를 읽으면서 저는 창립 회원들의 “보다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다자간 거래 시스템(a more viable and dur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을 개발하려는 의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적절합니다. 우리는 보다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다자간 거래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곳이 산만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대화에서, 나는 의견 불일치보다 더 많은 의견 일치를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두 WTO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자간 무역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포럼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WTO 회원국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1.07.01. – 2021.10.22.)

OECD, 국제조세개편안 핵심내용 합의 및 최종안 발표/미-EU 5개국 합의발표 (07.01./10.08./10.21.)

7월에 진행되었던 제12차 총회에서 OECD 회원국들은 개별국이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Digital Service Tax)를 철폐하고 매출 발생 국가에 다국적 기업과세권을 부여하고(Pillar 1),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Pillar 2)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을 발표하였다.

10월 8일에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는 140개국 중 136개국이 지지하는(비참여국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Pillar 1와 Pillar 2의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이 공표되었다. OECD 최종안이 발표 된 이후, 미국은 유럽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는 5개국-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와 합의를 통해 OECD 최종안이 이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고 그 수준이 OECD Pillar 1을 초과할 경우, 이는 향후 Amount A와 연계되어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과도기간 동안 미국은 현재 해당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종료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무역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Key word] #OECD #다국적 기업과세권 #글로벌 최저법인세 #필라 1 #필라 2
#디지털서비스세

EU CBAM 법률안 발표로 탄소가격 논의 점화 (07.14./10.14.)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가격(carbon price)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CBAM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5개 분야에서 직접배출되는 탄소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CBAM 확인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EU ETS와 연계되어 매주 변동된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Coons 의원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8월 10일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에 EU의 일방적인 탄소국경세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다.

WT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탄소가격은 그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는 가격 신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WTO, OECD, IMF가 공동으로 국가들이 탄소가격 설정을 위한 공통 방법론적 접근을 제공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ey word #탄소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탄소가격

미국-베트남 환율저평가 관련 합의도출 (07.21.)

미 재무부는 베트남 중앙은행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베트의 환율관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시절 재무부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베트남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USTR에서는 베트남 환율에 대한 제301조 조사 및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베트남 정부의 환율저평가가 상계가능 보조금 대상임을 밝힌바 있다.

합의문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베트남 동(Dong)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피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나아가 통화정책과 환율 체계를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USTR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환율 관행에 대한 제301조 조사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Key word #베트남 #환율저평가 #상계관세 #통화정책 #제301조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 (07.22.)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장국인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스팸메세지, 전자적 서명 및 인증, 전자 계약서(e-contracts)와 공공개방정부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및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항의 클린본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투명성 관련 조문도 거의 완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전자상거래 협정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 서버현지화, 소스코드(Source Code),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이슈에 대한 논의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브라질과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접근 및 경쟁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코트디부아르가 제출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능력배양과 기술적 지원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는 사이버보안(cybersecurity)과 무역관련 정보의 전자적 접근(electronic availability of trade-related information)과 같은 두 개의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WTO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위험기반한 접근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관련 정보의 전자적 접근 이슈와 관련해서는 해당 이슈가 전자상거래에서 다루어져야 할지 무역원활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Key word] #WTO #전자상거래 #사이버보안 #무역관련 정보의 전자적 접근

WTO 수산보조금 협상 일정 변경(08.30.)

7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던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9월 1일 다시 시작되었다. 협상 의장인 Santiago Wills는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초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에 진행된 협상에서는 협상문 초안 제5조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금지(Prohibition on Subsidies Concerning Overcapacity and Overfishing)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조항(carveout provisions)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도를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와 캐리비안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다른 대우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ey word] #WTO #수산보조금 #과잉어획 #개발도상국

중국, 대만 CPTPP 가입신청 (09.16./09.22.)

중국이 CPTPP에 가입을 공식 신청하였다. 중국은 CPTPP 기탁처인 뉴질랜드에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CPTPP 가입은 중국과 CPTPP 회원국간 투자 및 무역비용을 현저히 절감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CPTPP 회원국과 전세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만도 중국에 이어 22일 CPTPP 가입 신청서를 뉴질랜드에 제출하였다.

CPTPP는 페루가 9월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 총 11개 서명국 중 8개 국가-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통보 후 60일 이후 발효)-에서 발효된 상황이다. 6월부터 영국은 공식적으로 CPTPP 가입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10월 CPTPP 회원국간에 개최된 첫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이 본격 논의되었다.

Key word #CPTPP #중국 #대만 #영국 #가입 #accession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협상문안 도출 (09. 27.)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 동 협상은 GATS 제6.4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절차를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게 만들고 불필요하게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지 않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WTO 회원국의 정책 목표와 개발수준에 따라 조치에 대한 유연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상문안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승인절차시 남성과 여성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Section II, 22항) 이는 WTO 규범 중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서비스 규제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협상참여국들은 제12차 각료회의전인 10월말까지 각국 양허표 초안을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하였다. 9월 말 기준 협상에 참여중인 34개국의 양허표가 제출된 상황이다.

Key word #WTO #서비스 #GATS 제6조 #국내규제 #금융서비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첫 회의 진행(09. 29.)

미국과 EU가 피츠버그에서 무역기술위원회를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미국과 EU는 선언문과 더불어 5개의 부속서(Annex)를 함께 발표하였다. 부속서 I은 투자 심사에 관한 것으로 해외투자 심사시 OECD 가이드라인에 있는 주요 원칙을 따르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공공질서(public order) 위험을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부속서 II는 수출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공통된 기준과 협력분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부속서 III에서는 AI를 다루고 있으며,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IV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내용으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서 V는 글로벌 통상 도전과제로 비시장경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불필요한 장벽의 제거, 무역과 노동, 무역 관련 환경 및 기후정책과 조치,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언급하고 있다.

Key word #미국 #EU #TTC #해외투자심사 #수출통제 #AI #반도체

G20 통상장관회의 선언문 채택 (10.12.)

G20개국 통상투자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6개 주제-WTO 개혁, 무역과 보건, 서비스와 투자, 정부보조 및 공정경쟁, 무역과 환경지속성, MSMEs(소상공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G20 통상장관들은 WTO의 협상, 분쟁해결, 모니터링 기능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역과 보건이슈에서는 다자체제에서 팬데믹과 재난 대비와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서비스와 투자이슈에서는 WTO에서 진행중인 전자상거래 협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보조 및 공정경쟁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보조금에 대한 국제규정을 강화하고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규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보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지속성에서는 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협상을 지지하고 WTO 무역과 환경위원회가 상설 포럼으로 역할하는 것을 지지함을 밝히고 있다. MSMEs에서는 소상공중소중견기업의 국제무역 참여를 증진 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접근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ey word #G20 #WTO #무역과 보건 #서비스와 투자 #공정경쟁 #환경 #MSMEs

G7 통상장관회의 (10.22.)

G7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communique)에서 제12차 각료회의(MC 12)의 성공을 지지하고,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우선순위들을 언급하고 있다. 언급된 우선순위로는 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서비스국내규제, 전자적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를 비롯하여 무역과 지속가능성(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무역과 젠더(trade and gender)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MC 12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21세기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WTO 개혁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WTO 개혁은 WTO의 3가지 핵심기능-모니터링, 협상, 분쟁해결-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관해서는 시장왜곡 관행뿐만이 아니라, 글로벌공급망에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이슈를 계속해서 논의, 협력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communique)도 두고 있다. 더불어 무역현대화에서는 G7 디지털통상원칙(G7 Digital Trade Principles)을 제시하고, 탄소누출 위험에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Key word #G7 #MC12 #무역과 지속가능성 #무역과 젠더 #강제노동 #디지털통상원칙 #탄소누출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시아 경제참사관)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